##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조세범처벌법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배상명령신청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9. 29. 2006고합439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강신철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송인보외 4인

【배상신청인】 이정희

## 【주문】

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1억 원에, 피고인 2, 4를 각 징역 8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,0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, 77일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, 4에 대하여는 각 1년간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3으로부터 1,380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